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4
------	-----

제출년월일 : 2001. 8. 20.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립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으로 군 본청에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전담기구의 설치(안 제3조제1항)
 - 기구명칭 : 현장민원해결과
- 부서간 업무조정(안 제3조제2항)
 - 자치행정과 → 현장민원해결과 이관
 -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 설치 및 관리
 -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과 이관
 - 병무 및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민원해결과 → 신설
 - 읍면기능전환에 관한사항
 - 종전 자치행정과의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처리, 농어촌보안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처리

3. 참고사항

- 설치근거
 -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시군본청 한시기구·정원승인 「경남도 행정12200-11117(2001. 7. 6)」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과” 다음에 “현장민원해결과”를 삽입한다.

제3조제2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병무에 관한 사항,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삭제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현장민원해결과장

가. 읍면기능전환에 관한사항

나. 120만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 설치 및 관리

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처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 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현장민원해결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1호중 “사회복지과” 다음에 “현장민원해결과”를 삽입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기획감사실을 두고 자치행정과·종합민원실·문화관광과·재무과·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녹지과·수산과·건설과·도시과를 둔다.</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자치행정과장 가.~바. (생략) 사. <u>120만원기동대 운영, 현장생활·순회 기동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관리에 관한 사항</u></p> <p>3. 종합민원실장 가.~라(생략) 마. <u>병무에 관한 사항,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u></p> <p>4~11(생략)</p> <p>(신설)</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 -----</p> <p>-----·<u>현장민원해결과를 둔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자치행정과장 가.~바. (현행과 같음) 사. <u>병무에 관한 사항,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종합민원실장 가.~라.(현행과 같음) 마.(삭제)</p> <p>4~11(현행과 같음)</p> <p><u>12. 현장민원해결과장</u> 가. <u>읍면기능전환에 관한사항</u> 나. <u>120만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 설치 및 관리</u> 다. <u>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조사처리</u></p>